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85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안규백 · 이개호 · 김병주

장종태 • 이병진 • 박선원

황 희·허성무·한민수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3 비상계엄 사태에 긴밀하게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에 대하여 징계·보직해임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음. 특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준비하고 시행에도 깊게 관여한 지휘관들은 구속·기소되어 현재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방부는 육군 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을 보직해임하였음.

그러나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비상계엄당시에 깊게 관여하였던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률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 보직해임된 장교가 일정 기간 이상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면자동으로 전역하게 되어 군에서의 징계, 조사·수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상급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보직해임된 자가 필요한 징계, 조사등의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보직해임된 때에는 해당 계급 장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휘공백 장기화로 인한 안보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1조 등).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을 "장성급"으로,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 2.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직위에서 해제되거 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항(종전

- 의 제5항) 중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로 한다.
 -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국방부차관
 - 2. 합동참모의장
 - 3. 각 군 참모총장
 - 4. 제2호 및 제3호의 직위를 가지지 아니한 대장

제21조제3항 단서 중 "유사 직위에"를 "유사직위에"로, "전역된다"를 "전역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

방부장관은 대장 계급의 장교 중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 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 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 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 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단 서 신설>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 호에 해당하여 직위에서 해제 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③ 장성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 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 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 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 견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④ (생략)

제17조의2(보직해임)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 2.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 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 ④ (현행과 같음)
- 제17조의2(보직해임) ①·② (현 행과 같음)
 -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 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 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 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 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 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 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직해 임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

③ • ④ (생 략)

-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심의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병과장 임명) ①·② (생략)
 -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 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 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 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 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u>전역된</u>

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여 보직해임심의위
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u>. 국방부차관</u>
2. 합동참모의장
3. 각 군 참모총장
4. 제2호 및 제3호의 직위를 가
지지 아니한 대장
<u>⑤</u> ・ <u>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⑦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
<u> </u>
,
제21조(병과장 임명)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유사</u>
<u>직위에</u>
전역되

다.

④·⑤ (생 략)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② (생 략)

<신 설>

면,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나하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 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 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 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대 장 계급의 장교 중 3명 이상으 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다.